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7. 3. (금요일), 14:00~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성자, 김영운, 김해숙, 미등, 박상미,
박영규, 서영대, 전경옥, 전용일, 채금석,
허영일(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공개
2	‘전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검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3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공개
4	‘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조사방식과 조사자 검토 및 추천 소위원회 결과 보고	비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4-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5.5.22.)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전수교육조교 김성울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6.2.~)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 지정일 : 1971.2.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조홍복(‘33년생, 남, 영감, ‘02.2.5.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김성울(남, 수양반, 영감, 영노, ‘98.11.20. 선정)
이광수(남, 영노, ‘01.11.30. 선정)
태한영(남, 악사, ‘01.11.30. 선정)
이상열(남, 연희·가면제작·악사, ‘14.12.16. 선정)
문명헌(남, 연희·가면제작·악사, ‘14.12.16. 선정)

2) 추진경과

- 2015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5.1월)
- 해당 보존회에서 보유자 선정 관련 자료보고서 제출(‘14.1월)
- 보유자 인정조사 사전회의(‘15.3.27.)

- 「문화재청 고시 제2015-14호」에 의거 사전회의 시 의결한 ‘전승기량’ 조사방법을 사전에 조사대상자 및 보유단체에게 통보(‘15.3.31.)
- 보유자 인정조사 실시(‘15.4.17.)
- 2015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5.5.22.)
 - 김성울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인정 예고 후 보유자 인정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음.

3) 보유자 인정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 : 김성울, 이○○, 태○○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4) 예고사항(관보 제18523호/2015.6.2./문화재청 공고 제2015-217호)

- 예고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김성울 (金成律)	남	1946.5.9.	연희·가면 제작·악사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2(수영동)

- 예고 사유
 - 김성울은 수영야류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김성울의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여부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김성울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함.
 - 해당 기·예능은 ‘연희·가면제작·악사’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선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선자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5.5.22.)에서 ‘선자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 및 김동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고,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5.6.2.~)한 후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선자장(扇子匠)
- 신청자 : 김○○(남, 전남무형문화재 선자장, 2010 / 접선)
방○○(여, 전북무형문화재 선자장, 2010 / 단선)
김동식(남, 전북무형문화재 선자장, 2007 / 합죽선)
박○○(남, 담양죽공예명인 / 합죽선)
엄○○(남, 전북무형문화재 선자장, 2012 / 합죽선)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2.)
- 신규종목 지정가치 검토 서면조사(‘13.4.13.~5.3.)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지정가치 검토(‘13.5.24.)
- ‘선자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 전승자 신청 공고 및 접수(‘13.7.29.~8.28./신청인 5명)
- 보유자 인정조사 사전회의(‘14.10.30.)
- 현장조사 실시(‘14.11.8.~11.9./11.29.~11.30./12.7.)

- 심층기량심사 실시('15.2.24./2.28.~3.1.)
- 2015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15.5.22.)
 - '선자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동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인정예고 후 선자장 보유자 인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음.

3) 현장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 : 김○○, 방○○, 김동식, 박○○, 엄○○
- 공방조사 및 기량심사
 - 2014.11.8.~11.9., 11.29.~11.30., 12.7 / 신청자 공방
 - 부채 제작 전 공정에 대한 실연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4) 심층기량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인
- 조사대상자 : 김동식
- 조사기간/장소 : '15.2.24./2.28.~3.1. / 조사대상자 공방(전북 전주)
- 조사방법 : 합죽선 제작
 - 조사기간 내에 합죽선 제품 완성까지 전 과정을 실연

5) 예고사항(관보 제18523호/2015.6.2./문화재청 공고 제2015-217호)

- 예고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선자장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김동식 (金東植)	남	1943.11.25	합죽선 제작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 천동1가 580-3

- 예고 사유

- 선자장(扇子匠)은 한국의 전통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성, 예술성 등 전승 및 보존 가치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하는 것임.
- 김동식은 선자장으로서 합죽선 제작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선자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선자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김동식의 보유자 인정 여부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선자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하고 김동식을 보유자로 인정함.
 - 해당 기·예능은 ‘합죽선 제작’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4년도 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5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지정일 : 1971.9.13.
- 전승자 현황
 - 보유자(궁장 1명, 시장 3명)
 - 권영학(‘43년생, 남, 궁장(弓匠), ‘15.5.27. 인정)
 - 유명기(‘36년생, 남, 시장(矢匠), ‘96.12.10. 인정)
 - 박호준(‘44년생, 남, 시장(矢匠), ‘08.5.7. 인정)
 - 김종국(‘40년생, 남, 시장(矢匠), ‘08.5.7. 인정)
 - 전수교육조교(궁장 2명, 시장1명)
 - 김윤경(남, 궁장(弓匠), ‘09.9.17. 선정)
 - 김성락(남, 궁장(弓匠), ‘09.9.17. 선정)
 - 유세현(남, 시장(矢匠), ‘04.3.20. 선정)

2) 추진경과

- 2014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3.12.31.)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4.7월 / 신청인 2인)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5.4.24.)

- 현장조사 실시('15.5.28.)

3) 조사개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박○○(남, '97.6.30. 이수)
박○○(남, '00.6.30. 이수)
- 전승능력 및 전승환경 조사
 - 일자 및 장소: 2015. 5.28.(목)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 과제 : 화살 제작 전 과정(부잡이, 오늬만들기, 깃붙이기 등)을 실연함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개인)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전승기량이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5-04-004

4.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수교육조교 선정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4-005

1.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가. 제안사항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15.1.9.)를 거쳐 신규종목 지정조사('15.4~6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조사개요

- 조사종목 : 아리랑
- 특기사항 :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지정
 - ※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추진경과

-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포함('15.1.23.)
- 조사위원 검토(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15.3.13.)
- 조사자 사전회의('15.4.3., 4.17.)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실시('15.4~6월)

3) 지정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아리랑’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함.
 - 지정 예고 후 종목 지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단,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소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환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13.7.12.) 결과에 따라
전승자 공모를 실시하고, 조사단 사전회의를 거쳐 관계전문가 현장조사(‘15.5월)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환도장
 - * 강철을 가열해 단조접쇠과정을 거쳐 전통도검 제작
- 신청자 : 이○○(남, 경북), 한○○(남, 서울), 이○○(남, 경기)

2) 추진경과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2.)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검토 서면조사(‘13.4.20~5.20.)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지정가치 검토(‘13.7.12.)
 - 환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야철 기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
 - 공모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3.8월 / 신청인 3인)
- 관계전문가 사전회의(‘15.3.6.)
- 현장조사 실시(‘15.5.2.~5.3. / 5.23.~5.24.)

3) 현장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명

- 조사대상자 : 이○○, 한○○
 - ※ 이○○은 인정조사 참여 포기원 제출('15.5.14. / 사유 : 낙상으로 골절)
- 공방조사 및 기량심사
 - 일자 및 장소: '15.5.2.~5.3. 5.23.~5.24. / 신청자 공방
 - 품목 : 전통 칼 제작(신부 60cm, 병부(손잡이), 코등이를 만들어 최종 환도 완성)
 - ※ 전통 철 제련 공정은 단절되었기에 조사에서 제외함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전승기량이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5.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가 접수(‘15.5월)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 지정일 : 2005.9.23.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장용훈(남, ‘37년생, 한지 제조 / ‘10.2.11. 인정)
 - 홍춘수(남, ‘42년생, 한지 제조 / ‘10.2.11. 인정)

2) 확인조사 개요

- 기 간 : 2015.5.21.(목)
- 장 소 : 보유자 공방(경기도 가평군)
- 확인자 : 이상민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장용훈(남, ‘37년생, ‘10.2.11. 인정)

3) 확인결과

- 장용훈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라. 검토의견 :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장용훈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4-011

1.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 지 정 일 : 1964.12.7.
- 전승자현황
 - 보유단체 : 남사당놀이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1명) : 박○○(‘44년생, 남, 꼭두각시놀음, 덧뵈기, 풍물,
‘02.4.25. 인정/ ‘13.12.31. 해제/ ‘15.6.11. 인정해제처분 취소)
 - 전수교육조교(1명) : 진명환(남, 소고, ‘02.2.5. 선정)

2) 진행경과

- 2010년 이수증 부정발급 및 이수결과보고서 문서 위조에 따른 고소
- 벌금형 확정에 따른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위원회 심의(‘13.11.8.)
- 보유자 인정해제(‘13.12.31.)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 제기(‘14.3.4.)
 - 원고/피고 : 박○○/문화재청장
 - 3심(대법원2015두39699 / ‘15.6.11.) 원고 승소

<판결선고>

- 원고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는 존재하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이라는 보유자 인정제도의 목적이 상실될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위반행위(이수심사 허위서류 작성)가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상실될 정도의 비위 행위는 아님
- 유일한 보유자인 원고에 대해 보유자 인정 해제처분을 하면, 남사당놀이의 계승·전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원만 선고되었고, 타 사례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위 정도는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후속조치

-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관보 고시(‘15.6.29.) 및 해당자·보유단체·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알림

라. 향후계획

- 보유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재개(‘15.7월분부터)
- 소송비용 지급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접수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조사방식과 조사자 검토 및 추천 소위원회 결과 보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